

-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□ 4월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|
| ○ 일 시 : 2025. 4. 21.(월) 19:00 |
| ○ 장 소 : 주민센터 3층 다목적실 |

회의자료



갈현제2동 주민자치회

목 차

【 주민자치회 보고 및 논의사항】

1. 주민자치회 운영 보고	1
- 2025. 1분기 수강료 징수·집행 현황		
- 2025. 1분기 북카페 운영 수입·지출 현황		
- 2025. 1분기 주민자치회 사업비 집행 현황		
2. 주민자치회 보고 사항	5
- 2025. 쥬빌리 오케스트라 일일봉사 현황		
- 각 분과회의 논의 진행 내용 공유		
3. 주민자치회 안건(논의) 사항	6
- 주민 공론장 및 주민총회 추진 계획 논의		
- 갈현2동 자치회관(공유공간) 분과별 관리 분담 선정		
- 2026. 마을의제 발굴 권역별 선정의 건		
4. 기타사항	7
- 마을의제 발굴 및 주민공론장 참고 영상 시청		
- 대통령 선거 관련 주민자치회 운영 및 공직선거법 안내		
- 산불 성금 모금 내역 공유		
5. 공지사항	별첨
- 참여의 큰 숲 이용 및 활성화 안내		

운영 보고

1

25. 1분기 수강료 징수·집행 현황

■ 수강료 징수·집행 총괄 (3. 31. 기준)

(단위 : 원)

월	수강료 수입액				수강료 지출액	수 강 료 지출잔액	비 고
	소계	전월 이월액	징수액	기타			
1월	11,449,502	11,228,802	220,700	-	150,530	11,298,972	
2월	11,388,972	11,298,972	90,000	-	1,374,010	10,014,962	
3월	13,708,962	10,014,962	3,694,000	-	1,605,120	12,103,842	
총 계		4,004,700	-	3,129,660			

■ 수강료 지출내역

○ 총괄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계	강사료	지방세납부	기 타	반환액	비 고
				공공요금 (공유공간)		
1월	150,530	-	-	-	150,530	
2월	1,374,010	1,218,420	66,820	4,400	84,370	
3월	1,605,120	1,392,480	85,140	-	127,500	

○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집행일자	집행액	집 행 내 역	비 고
1.3.~1.20.	150,530	수강료 반환	
2.3.~2.13.	84,370	수강료 반환	
2.4.	6,070	지방세 납부	
2.4.	60,750	원천세 납부	
	1,218,420	강사료 지급	
2.12.	4,400	인증서 발급 수수료	

3.12.	1,392,480	강사료 지급	
3.19.~3.31.	127,500	수강료 반환	
3.21.	77,400	원천세 납부	
	7,740	지방세 납부	
합 계	3,068,970		

2

25. 1분기 북카페 운영 수입·지출 현황

■ 북카페 운영 수입·지출 총괄 (3. 31. 기준)

(단위 : 원)

월	북카페 수입액			지출액	지출잔액	비 고
	소계	전월이월액	수입액			
1월	5,053,776	4,458,276	595,500	126,030	4,927,746	
2월	5,550,137	4,953,137	597,000	720,520	4,829,617	
3월	5,349,952	4,845,952	504,000	658,644	4,691,308	
총 계			1,696,500	1,505,194		

■ 지출내역

○ 총괄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계	인건비	운영경비	재료비	기 타	비 고
1월	126,030	-	67,980	58,050	-	
2월	720,520	-	28,380	692,140	-	
3월	658,644	-	514,764	143,880	-	

○ 세부내역

(단위 : 원)

집행일자	집행액	집 행 내 역	비 고
1.14.~1.24.	58,050	카페 비품 구매	유자차, 우유 등
1.15.	39,600	피에스피텍(포스 사용료)	
1.21.	28,380	KT통신요금	
2.3.~2.25.	375,270	카페 비품 구매	우유, 컵홀더 등
2.17.	316,870	24년 하반기 부가세 납부	
2.21.	28,380	KT통신요금	
3.4.~3.11.	143,880	카페 비품 구매	우유, 세제 등
3.10.	1,034	사무국 통신비 가산금	
3.14.	39,600	피에스피텍(포스 사용료)	
3.20.	30,000	사업자 위생교육비	
3.21.	28,380	KT통신요금	
3.31.	415,750	24년 상반기 부가세 납부	
계	1,505,194		

▣ 주민자치회 사업운영비 집행현황 (4. 18.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사 업 명	교 부 액	집 행 액	잔 액
		12,825,000	258,256	12,566,744
구비 운영·사업비	사업 운영비(2025)	3,825,000	258,256	3,566,744
구비 의제개발비	우리마을 필요한 사업 찾기(의제발굴. 주민총회)	9,000,000	0	9,000,000

▣ 2023년 참여예산사업 집행현황 (4. 18. 기준)

(단위 : 원)

구 분	사 업 명	교 부 액	집 행 액	잔 액
		70,000,000	387,000	69,613,000
참여 예산	아가야 같이가리!	10,000,000	216,000	9,784,000
	에어바운스 꿈놀이터	10,000,000	0	0
	신나는 마을 운동 클럽	10,000,000	117,000	9,883,000
	쓰레기 감량 실천단	10,000,000	0	0
	최고의 아름다운 순간!	10,000,000	54,000	9,946,000
	앵봉산 둘레길 벤치 설치(시설)	20,000,000	0	0
구 분	사 업 명	교 부 액	집 행 액	잔 액
		10,000,000	0	10,000,000
1동-1대학	은평대학 문화·예술 프로그램	10,000,000	0	0

주민자치회 보고사항

▣ 2025. 쥬빌리 오케스트라 3~4월 일일봉사 현황

- 함께 참여하는 쥬빌리 오케스트라 일일봉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위원님들 감사합니다.



- 남은 4월과 5월 봉사도 잘 부탁드리며, 변동사항이 있으시면 꼭 사무국으로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.

쥬빌리오케스트라 봉사 메뉴얼		4~5월 봉사 일정표
날짜	봉사자	
4/26	김현순	
5/3	휴무	
5/10	오유나	
5/17	박시형	
5/24	백현빈	
5/31	남두이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봉사시간 10:00 ~ 13:00 - 수업 10:30 ~ 12:30 		

쥬빌리오케스트라 봉사 메뉴얼



광현교회 지하 1층
광현청소년센터로 오세요^^

보이시는 두 개의 문은 교회에서
아침 10시 이전에 열어주시기로 했답니다^^

홀로 들어오셔서
왼쪽 벽면의 불을 꺼주세요.
(난방은 운전을 늘려 22-23도에 맞춰주세요)

사무실을 제외하고 모든 방과
글로리아 홀에 불을 켜주세요

* 단원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^^
* 연습 장면 사진을 한 것씩 찍어 단톡에 올려주세요~^^

각 방에 있던 보면대는 다리를
정리한 후 한 쪽 방향을 보도록
세워 정리합니다

글로리아홀 안 피아노 근처에 있는
악기실로 가셔서 아이들의 악기를
선반에 잘 옮겨 정리합니다.
소동 및 냉난방을 꺼주시고 문을 잠그시고
구가하시면 됩니다

▣ 각 분과회의 논의 진행 내용 공유

- 꿈꾸는 미래 → 녹색 어울림 → 희망 동행

주민자치회 안건(논의) 사항

1

주민 공론장 추진 계획 논의

■ 주민총회를 위한 갈현2동 주민공론장

- 일 시 : 5. 9.(금) 15시
장 소 : 주민센터 3층 다목적홀

- 의결사항

동의 () 비동의 ()

■ 주민총회 개최

- 일 시 : 8. 23.(토) 15시
장 소 : 광현교회 또는 주민센터 3층 다목적홀 예정

- 의결사항

동의 () 비동의 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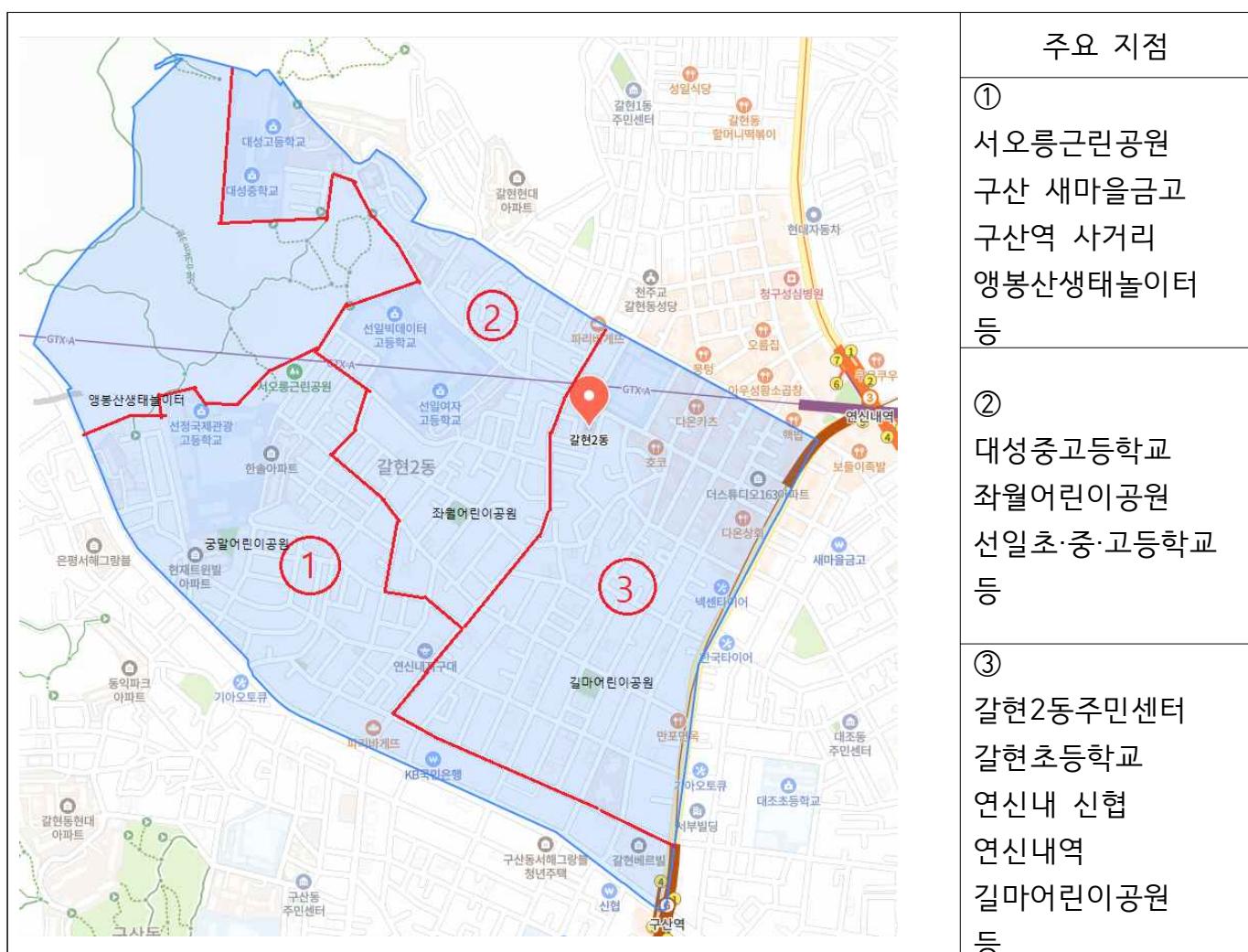
2

갈현2동 자치회관(공유공간) 분과별 관리분담 설정

꿈꾸는 미래 분과	녹색 어울림 분과	희망 동행 분과
소공녀	소공자	갈마루

- 의결사항

동의 () 비동의 ()



①

- 의결사항

②

③

동의 ()

비동의 (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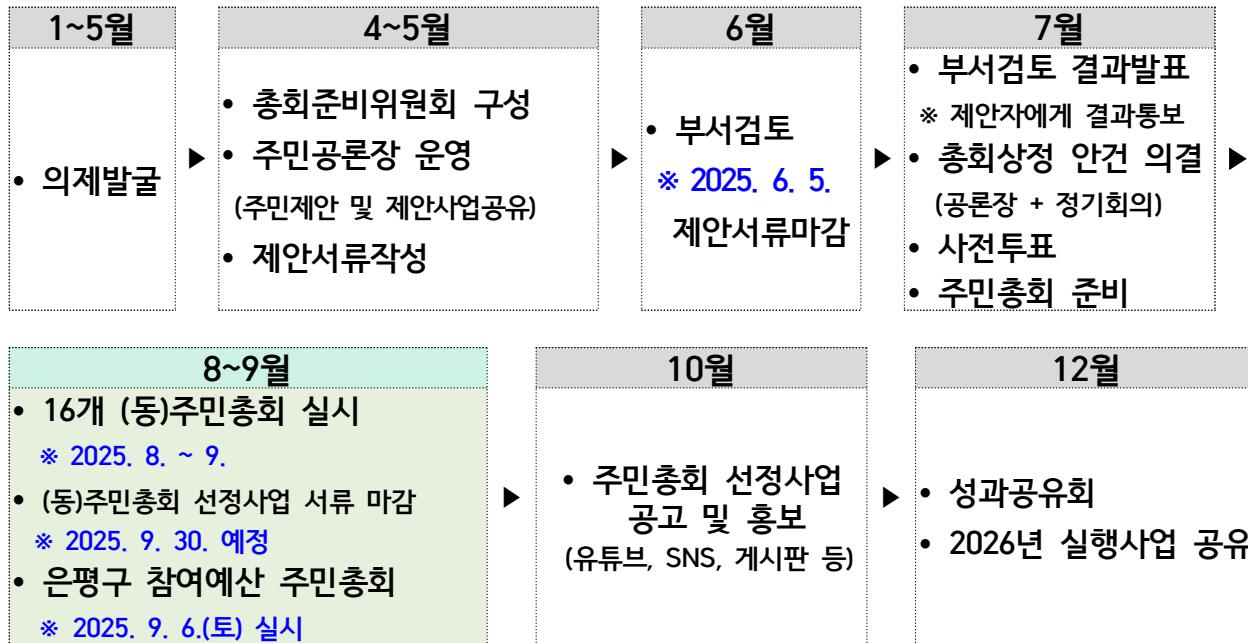
기타 사항

▣ 2026. 마을의제 발굴 및 총회 관련 안내

○ 주민자치회 운영 가능 일정

구 분	선거일 전 60일 ~ 23일	공직 선거 기간	
		선거일 전 22일 ~ 선거일	
주민참여예산 주민공론장 운영	○	X	
회의 운영	○	X	
(동)지역사업 및 행사 운영	X		X

○ 주민총회 운영 절차



○ 2026년 참여 예산 배분 예정안

- 시설사업 : 담당 부서 실행 / **3천만원**
- 프로그램 사업, 환경사업, (동)특성화 사업 / **4천만원**
- ※ 24년 1개 사업별 800만원 이상이었으나 **26년 사업별 예산 하한액이 없음**

■ 지방재정법 제 39조

제39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「지방자치법」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“주민참여예산제도”라 한다)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.

<개정 2015. 5. 13., 2018. 3. 27., 2021. 1. 12.>

- 중략 -

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

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(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)

시행 2025.1.7. [대통령령 제 35186호] 2025.1.7. 일부개정 행정안전부(재정정책과)

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(이하 이 조에서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에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20. 3. 3.>

1. **공청회 또는 간담회**
 2. 설문조사
 3. 사업공모
 4.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
- 중략 -

○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46조에 따라, 은평구 주민자치회에서 실시 하는,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참여예산 **주민공론장** 운영은 선거기간 **(선거일 전 22일 ~ 선거일)을 제외하고 운영 가능**

■ 산불 성금모금 목표액 500,000원 **【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】**

목표 달성을률	156%	총 계	780,000
---------	------	-----	---------

■ 대통령 선거 관련 주민자치회 운영 관련 선거법 안내

주민자치위원회 선거운동 금지사항

○ 상시제한

- **선거운동 제한** : 주민자치(위원회)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

공직선거법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. (생략)

7. 통·리·반의 장 및 읍·면·동주민자치센터(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·면·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·복지·편익시설을 총칭한다. 이하 같다)에 설치된 **주민자치위원회**(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·면·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위원

*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제27조(주민자치회의 설치), 제29조(주민자치회의 구성 등)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시범적으로 설치·운영하는 '주민자치회' 및 그 위원은 「공직선거법」상 '주민자치위원회' 및 그 위원에 관한 규정(제60조 제1항, 제86조 제1항, 제103조 제2항 등)이 적용됨 (중앙선관위, '19.6.24)

* 주민자치(위원회) 위원이 예비후보자, 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선거운동 가능

- **선거관여 금지** : 주민자치(위원회) 위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공직선거법 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① (생략)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1.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(候補者)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. 이하 이 항에서 같다)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
2.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
3.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
4. 삭제 <2010. 1. 25.>
5.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
6.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
7.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

○ 90일 제한

- 선거사무장·선거연락소장·선거사무원 등 제한

공직선거법 제60조(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) ② (생략)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·리·반의 장이 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·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(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)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, 선거일 후 6월 이내(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일까지)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.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.

- ▶ 주민자치위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선거사무관계자(선거사무장, 선거연락소장, 선거사무원, 활동보조인, 회계책임자, 연설원, 대담자, 토론자,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 등)가 되고자 할 때 **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함**
- ▶ 사퇴의 시기는 공직선거법 제53조 4항을 준용해 소속 주민자치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그 시기로 봄.
※ 공선법 제60조 2항을 자동 복직의 근거로 해석하기는 어려움
- ▶ 주민자치회 위원은 사퇴 후 2년 동안 주민자치회 위원등록을 할 수 없음
- ▶ 위원이 아닌 분과원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는 경우 사퇴의 의무는 없으나, 가급적 선거사무관계자로 활동하는 동안은 분과원 활동을 자제

□ 주민자치회의 활동 제한

○ 선거기간 중 제한

- 주민자치회 회의 등 금지 : 각종집회 등의 제한

공직선거법 제103조(각종집회 등의 제한)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, 새마을운동협의회, 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)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.

○ 60일 제한

- 행사 개최 및 후원 금지 :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

공직선거법 제86조(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) ②지방자치단체의 장(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)은 선거일전 60일(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)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
4.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, 사업설명회, 공청회, 직능단체모임, 체육대회, 경로행사,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
 - 가.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·후원하는 행위
 - 나. 특정일·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
 - 다. 천재·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·복구를 위한 행위
 - 라.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(有償)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·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. 다만,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를 제외한다.
 - 마.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
 - 바. 가목 내지 마목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
5. 통·리·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